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원

나. 면 적 : 354,567㎡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공항-지역간 연계강화 및 혁신산업 도입으로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을 서울 서남권 도시재생·新경제거점으로 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식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 고시날로부터 3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예정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규모(연면적)	비고
주요 도입기능	업무시설	209,710.36㎡	—
	전시/컨벤션	18,113.80㎡	—
	숙박시설(호텔)	15,098.10㎡	—
	상업시설	149,864.05㎡	—
	오피스텔	10,086.76㎡	172세대
그외	그 밖에시설	789,651.07㎡	교통시설, 문화시설, 생활SOC, 공공시설 등
합계		1,192,524.14㎡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주용도
1블록	183,666	51.8	환승시설, 컨벤션, 생활SOC, 문화시설, 주차장
2블록	46,139	13.0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교육센터, 국제업무, 공공시설(마중물), 부대시설, 상업시설
3블록	70,305	19.8	모빌리티산업(그린, 항공, 스마트, 소셜), 지식산업(국제첨단, 청년벤처, 도시형제조업), 주거시설, 상업시설
도로	39,248	11.1	단지 내 도로
기존시설	15,209	4.3	국립항공박물관 존치
합 계	354,567	100.0	-

나.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20% 이하	김포공항 국가시범지구가 속하는 공항시설 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용적률	50% 이하	
높이/층수	공항시설법 및 관련기준에 따른 제한사항 적용	-
수용인구	396인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입체보행시설, 옥외광장 및 옥상공원, 복합환승시설 조성

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 : 청년 창업지원시설, 커뮤니티시설 조성

다. 생활SOC에 관한 계획: 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조성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4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총사업비 (억원)	재정지원(억원)		자기자본(억원)				타인자본(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한국공 항공사	서울주 택도시 공사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29,640	40	60	440	50	-	471	-	28,579	-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정책과 (☎ 02-2133-8636),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끝.